



발명으로 만드는 일자리,
특허로 더하는 행복



보도자료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 장 전현진 서기관 이학진	042-481-5842
	2016년 6월 27일(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6월 26일(일)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 받은 수술방법? 속지 마세요!

- 특허청, 전국 성형외과 특허 허위표시 광고 집중 조사 실시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난 5월 23일부터 5월30일까지 서울·경기지역 성형외과 홈페이지 및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SNS)에서 특허 허위표시를 광고하는 25개 병원에 대하여 허위표시를 조사한 후 올바른 특허표시를 하도록 시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수술법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형외과에서 마치 수술방법을 특허받은 것처럼 허위광고가 성행함에 따라서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합동으로 조사 및 조치를 취한 결과였다.
- 특허 허위표시로 적발된 성형외과의 주요 위반 내용은 ▲ 상표 등록을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13곳) ▲ 수술기구 특허 등록을 수술방법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곳) ▲ 특허 출원을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2곳) ▲ 특허 등록 번호 불명확 표시로 등록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5곳)이다.

- 특허청은 더 나아가 전국 주요 성형외과 대상으로 인터넷 광고 (홈페이지, 블로그·SNS)외에도 신문 광고, 전단지, 대중교통 광고 등으로 확대 조사하여 허위표시 광고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 금년 7월말까지 신문·잡지 및 전단지 광고는 정정 광고 또는 전량 회수토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지재권 허위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성형외과의 지재권 허위표시 경우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허 허위표시 근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관련 법령>

지식재산권 표시 및 허위표시 관련 법령

(1) 특허 허위표시

특허법 제224조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제1호의 물건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4.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처벌 법령

(1) 특허 허위표시죄

특허법 제228조

제228조(허위표시의 죄)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